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16

발의연월일: 2020. 9. 18.

발 의 자 : 송옥주·장철민·양원영

아수잔비 · 윤준병 · 오영환

윤미향 · 김회재 · 김철민

이형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각종 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지만, 명칭이 '협력금'으로 되어 있어 부담금 부과의 목적 및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별표 제6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40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2호 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